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426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사단법인 [redacted]본부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3. 23. 선고 2016구합6845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9. 27.

판 결 선 고 2017. 11. 8.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3,406,030원, 지방교육세 3,051,770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농어촌특별세 3,814,710원, 가산세(취득세의 신고불성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방교육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14,905,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장학단체인 원고는 이 사건 장학숙의 소유자로서 그 의사에 따라 장학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장학숙을 건축하고 이를 무상임대하기로 하여 춘향장학재단에 위탁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의 공익사업인 장학사업을 하는 것도 이 사건 장학숙을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장학숙은 신축 이후 원고의 지휘, 통제나 관리 및 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제3자인 춘향장학재단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무상공여되어 춘향장학재단이 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장학숙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2008. 12. 30. 설립 이후 이 사건 장학숙 취득 전까지 장학사업을 한 적이 없고, 단지 기부금을 모집하여 이 사건 장학숙을 신축한 것만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장학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장학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춘향장학재단에 대한 지휘·통제 및 관리 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장학숙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도 정당하다.

살피건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학자금, 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13, 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장학숙 신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기부금 모집활동을 하였고, 이 사건 장학숙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기부금 모집활동을 하기 전인 2010. 2. 8.부터 정기적으로 전라북도 애향장학운동본부의 하위 조직으로서 전라북도 애향장학재단에 학생을 추천하는 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식의 장학지원사업을 하였고,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위하여 [redacted] 관내의 학교장, 교직원 및 학부모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이 사건 장학숙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선발심의위원회에 이사 파견, 견학행사 등 홍보활동, 입사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의 활동을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장학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장학숙을 '장학단체로서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오인하여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배기열

판사 박재우

판사 정승규